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2.09.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한다)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본 대학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구성원”이란 본 대학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2 장 조직과 업무

제4조(조직 및 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인권·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그밖에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 관련 업무의 수행
2.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그 밖의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대응 업무의 수행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 예방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3. 인권침해 등 사건의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제·개정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 수행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사와 구제

제11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되어 센터장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권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건이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에 계속된 경우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은 상당한 범위에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⑥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2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3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조사의 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의견서, 증빙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3조(구제조치 등)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요청)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5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22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3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칙

제26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구제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조사와 구제 절차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